

# 학생회 회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제주한라대학 총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 2 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신장하고, 진리 탐구의 인격도야에 힘써 장차 중견전문인으로서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징계 기간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조(권리와 임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자치활동에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 5 조(활동의 범위) 본회의 활동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총대의원회를 둔다.

제 7 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제 8 조(지도)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9 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0 조(효력정지) 본회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 시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2장 집행기관

### 제1절 총학생회

제 11 조(구성) 본회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을 각 1인을 둔다.

**제 12 조(기능)** 총학생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집행
2. 총학생회의 제반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의 수립
3. 총학생회비의 책정
4.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제 13 조(회장의 직무)**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1.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을 추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제 14 조(임기)**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5 조(신분보장)**

1. 총학생회장은 총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총대의원회에서 총학생회장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직이 상실되며 기타 임원은 보궐 선거 종료와 함께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90일 이내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총부학생회장이 승계한다.
3. 보궐선거는 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상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16 조(각부서의 기능)**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 : 본 회의 제반사업의 기획
2. 총무부 : 본 회의 회계 및 서무
3. 문화부 : 본 회의 학술,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4. 홍보부 : 본 회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본 회의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제2절 야대 학생회

**제 17 조(구성)**

1. 야대학생회는 당해 2부대학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2. 야대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1인을 두며 총학생회의 준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18 조(지위)

1. 야대학생회 학생회장은 야대학생회를 대표하며 야대학생회 고유업무를 총괄하고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야대학생회 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9 조(업무)

1. 야대학생회는 당해 대학 고유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2.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운영세칙은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절 운영위원회

### 제 20 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야대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그리고 총학생회 각 부서의 부장, 각과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부학생회장이 된다.

제 21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 총학생회 업무를 집행한다.

### 제 22 조(회의)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절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선거

제 23 조(선거방법)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의 선출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제 24 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25 조(피선거권)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2.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체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3.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제 26 조(선거시기)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의 선거시기는 매년 10~11월로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 27 조(보궐시기) 총학생회장이 궐위시는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총부학생회장이 그직을 승계한다.

제 28 조(선거규정)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총대의원회

제 29 조(지위) 총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30 조(구성)

1. 총대의원회는 각 과당 2인으로 구성한다. 야간이 있는 과는 주야 각각 1인으로 한다. 의장, 부의장이 있는 과는 1학년만 1인으로 구성한다.
2. 총대의원은 25명의 과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3. 1학년은 과대표로 구성한다. 의향이 없을 시 추천에 의한다.

제 31 조(임기) 총대의원회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 32 조(임원선출)

1. 의장 및 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서 호선한다.
2. 각 부서장은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제 33 조(임원의 직무)

1.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총대의원회 각 부서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 34 조(기능) 총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총학생회 회비의 심의 및 승인권
3.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
4.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
5. 총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권
6. 운영위원회 위원의 출석요구 및 질의권
7.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각 부서장의 불신임 결의권
8. 서무회계에 대한 감사권
9.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 35 조(회의)

1. 총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2. 정기회의는 매년 3월, 6월, 9월, 11월에 의장이 소집 주재한다.
3.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재적 대의원 1/2 이상이 요구 시 또는 학생회 회장이 요구시 3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 주재한다.

### 제 36 조(의결)

1. 제 34조에 규정된 의결사항 중 1항, 2항, 7항, 8항은 재적의원 2/3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34조에 규정된 의결사항 중 3항, 4항, 5항, 6항, 9항은 재적의원 1/3 출석과 출석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 조(결과의 통보)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학생회장에게 2 일 이내에 통보하고 전체 학생에게 즉시 공고해야 한다.

## 제4장 동아리연합회

제 38 조 (목적) 학생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애국애교의 정신을 고취시키며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여 건전한 학생활동을 하는데 있다.

### 제 39 조(동아리 구성)

1. 모든 동아리의 구성원은 본 대학 재학생에 한한다.
2. 각 동아리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3. 학생의 모든 동아리 가입은 1인 1개 동아리로 하며, 학생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모든 동아리는 지도교수 1명 이상을 추대하여야 한다.

### 제 40 조(동아리등록)

1. 동아리등록은 매학기초 1개월 이내에 하며 아래의 서류(소정양식)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에 제출한다.
  - 가. 동아리 등록부
  - 나. 지도교수 승낙서
  - 다. 동아리 회원 명단
  - 라. 동아리 회원 명단
  - 마. 동아리 행사 계획서
2. 학생 동아리 회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각 동아리는 학생복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동아리의 등록은 학생책임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1 조(동아리 행사 기간)

1. 동아리 행사 신고는 행사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에 제출하고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행사에 필요한 공고물(포스터, 현수막) 및 기타 유인물을 공고 또는 제작 배부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의 원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아리행사에 강의실이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전에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42 조(동아리 행사 결과보고)** 행사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지도교수 또는 동아리대표 학생이 학생복지처에 보고(전화, 구두, 서면)한다.

**제 43 조(동아리활동 준수사항)**

1. 학내외 모든 행사는 시종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동아리활동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금한다.
  - 가. 퇴폐적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 나. 입장권 판매 등 영리 행위
  - 다. 승인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공고하는 행위
  - 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지 않은 외부 인사의 초청

**제5장 졸업준비위원회**

**제 44 조(구성)**

1. 졸업준비위원회는 각 학과 2, 3학년 과대표로 구성한다.
2. 졸업준비위원장은 총대의원의장이 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단, 2항의 위원장이 당연해도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각 학과 2, 3학년 졸업예정자 과대표 중에서 호선하다.

**제 45 조(업무 및 권한)** 졸업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졸업준비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6장 학생책임지도활성화위원회**

**제 46 조(구성)**

1. 학생 자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책임지도활성화위원회를 둔다.
2. 학생 지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지도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 47 조(기능)** 학생책임지도활성화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에 명시된 각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재정**

**제 48 조(회비등)** 총학생회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49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0 조(예산안평성 및 집행)**

1.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1차 정기 총대의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총대의원의장은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주일 이내에 의결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총대의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2항의 기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총학생회장은 학생책임지도활성화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전연도 예산에 준한 1개월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예산정립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 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총대의원회의 부의한다.

**제 51 조(결산)** 총학생회장은 매년 11월 총대의원 정기총회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부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회칙개정**

**제 52 조(발의)** 학생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대의원회 재적인원의 1/3 이상의 발의
2. 총학생회장의 발의

**제 53 조(의결)** 발의 시 총대의원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 3일이 경과 후 총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총대의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학장, 부학장 → 총장,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